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9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3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 활동과 일상생활상의 최소한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.
-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.
- 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.
- 실태조사(안 제5조).
- 문화안전망 자문단 구성 및 기능(안 제6조 ~ 제7조).
- 지원 사업(안 제8조).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9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문화 생활 및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2) 주요 내용

-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.
 - 금천구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
- 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.
 -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
 - 제2항제4호에서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은 금천구의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,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조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실태조사(안 제5조).
- 문화안전망 자문단 구성 및 기능(안 제6조 ~ 제7조).
- 지원 사업(안 제8조).
 -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사 연구, 프로그램 운영, 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함.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9조).

다. 검토의견

○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함.

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때, 문화권에 대한 보장은 기본적 권리로 볼 수 있음.

○ 이러한 문화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겪는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을 치유하고 사회적 연대나 공동체적 지지선을 일궈내는 촉매가 되며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 향유를 함께 이룩해 가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임.

따라서 문화안전망 구축이 문화생태계의 육성 및 우리 주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